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목 차>

1. 관할청의 인가 없이 시설을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김승훈
	담당부서 (과)	학교정책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김영진		연락처	044-203-6684
	과장	마소정		이메일	shkim0814@mail.go.kr

2026. 08. 03.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김영진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관할청의 인가 없이 시설을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2.규제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8조		
	3.위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14~2026.09.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관련법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 피해 심각 - 현 「초·중등교육법」 상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벌금의 제재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초·중등교육법」제65조의2* 신설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26.5.19.)하였으며,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부과기준 조항 신설 필요		
	7.규제내용	- 인가 없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최대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2만원, 180일 이상인 경우 1일당 16만원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관할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9.규제목표	- 기존 「초·중등교육법」 상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불안정한 시설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공교육 체계 확립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기 운영 중인 기관의 규모도 상이(10~100명 이상)하고 일반국민의 편익인 ‘공교육 이수’도 금전으로 환산이 곤란하여 책정 불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미해당

		예외기준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8조(이행강제금) 관할청은 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180일 미만인 경우 : 1일당 12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180일이 되는 날부터 1일당 16만원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관련법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 피해 심각
- 현 「초·중등교육법」상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벌금의 제재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 「초·중등교육법」제65조의2 신설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마련 (26.5.19.)되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부과기준 조항 신설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법 제65조의2에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하면서 세부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명령불이행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12만원을 부과하되,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16만원을 부과하여 6개월당 3천만원 수준으로 부과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교육청 업무담당자* * 인가 없이 운영 중인 시설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할청을 통해 의견수렴	○'26.6.25.(목), 영상회의, 시행령 개정령안 공유 및 의견수렴(17개 교육청 본청) ○'26.7.7.(화), 영상회의, 시행령 개정령안 공유 및 의견수렴(수도권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이견없음	

3. 규제목표

- 기존 「초·중등교육법」의 폐쇄명령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재하였으나, 이행강제금 신설로 제재 실효성 확보
-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호하고,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공교육 체계 확립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제1호는 ‘인가없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한 폐쇄명령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침익적인 수단이 아니며,
- 헌법재판소는 법 제67조제2항제1호 위헌심판청구 등 유사사례에 대해 공교육체계의 보호와 교육 및 학습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영업의 자유 등보다 크다고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폐쇄명령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에 해당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국가별 공교육 체계(학교설립 기준, 인·허가제도,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가 서로 상이하여 공교육 제도 위반 시의 행정적 제재 방식 등의 직접 비교 불가

○ 타법사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법 제49조제1항 :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1억원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시행령 제44조제1항 : 명령불이행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365일 이상인 경우 1일당 25만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할청의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법하게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최초 약 6개월간 약 2,150만원, 이후 6개월마다 약 2,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 운영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폐쇄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시도교육청의 학원 및 대안교육 담당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점검 전담부서를 지정하였으며,
- 신고 접수된 시설에 대한 점검('25.12.~'26.8.)을 통해 폐쇄명령 처분 대상 시설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시행령 시행 이후 행정처분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시도교육청 기존 인력을 활용한 실태점검, 폐쇄명령 및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 진행 예정으로 별도 예산 불요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이행강제금)가 신설되었으며,
- 본 시행령 개정은 위 신설조항에서 위임한 폐쇄명령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
- 폐쇄명령 제도 또한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공교육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 규정된 행정행위이며, 폐쇄명령 신청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소명도 가능함
- 따라서,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관련 본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